

# 회장 후보자 결격사유 공고

남양주시 씨름협회 회장 후보자 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 
공고합니다.

## ■ 후보자 결격사유

1. 남양주시 지역거주(주소자나 거소자, 사업장 주소지, 직장 주소지)  
체육인이 아닌 자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3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 
시도·시군구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  
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 
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.(형이 실  
효된 사람을 포함한다)
4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 
시도·시군구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 
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  
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 
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- 4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 
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 
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 집행이  
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로  
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 
지나지 아니한 사람.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